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및 육아 지원 근거 신설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39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 의견	2
1. 여성농어업인 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
가. 관계 부처 의견	2
1) 농림축산식품부	2
2) 고용노동부	3
나. 검토의견	3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호선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5. 4. 18
3. 회 부 일 : 2025. 4.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육아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비교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출산·육아와 농어업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출산·육아로 인하여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보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청년 농어민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여성농어업인 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난임치료·유산·사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4(여성농어업인 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난임치료·유산·사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요건, 지원 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원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에 대한 출산급여는 기존 제도로 지원 가능함. 또한, 농업인에게 육아 휴직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타 직종과 형평성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2)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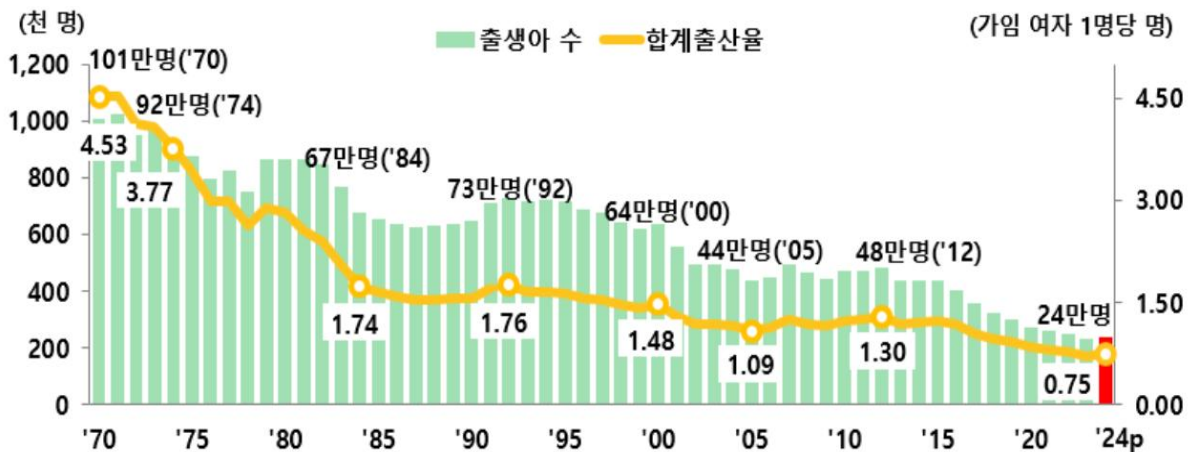
출산(유산 및 사산)한 여성농업인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참고자료1] 참조)를 수령 가능하여 개정안 신설시 중복 수혜 우려가 있음.

나. 검토의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합계출산율¹⁾ 0.75명(2024년 기준)이라는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에 정부는 2024년 6월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경제·사회·안보 등 전방위적 비상사태²⁾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음.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4)]



※자료: 통계청, 2024년 출생통계(잠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 1) 가임기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6.)
 - 경제: 50년 후 생산연령인구 절반 이하 감소
 - 사회: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시대로 도래('72)
 - 교육: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인프라 붕괴
 - 안보: 상비병력 유지 곤란
 - 지역소멸: 전체 시군구의 52%가 소멸위험지역 지정 중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90일 보장, 육아휴직 급여 1년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산·육아 지원 제도들은 도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고, 여성농업인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25년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주요사업]

지원 대상	정책명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제도내용)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가능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휴가종료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사용가능 *중소기업은 최초 2일 정부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 및 출산한 피보험 근로자 (휴가종료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기간(최대 90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사산한 피보험 근로자 (휴가종료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산·사산휴가기간(최대 90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가 출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종료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정부가 통상임금(상한액 1,607,650원) 지원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 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피보험 근로자 (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동안 월별 지급(통상임금 최대 100%, 휴직기간별 차등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있는 피보험 근로자 (단축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고, 정부가 급여를 지원
비근로자 (농업인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유산·사산 포함)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출산급여 총150만원 이내 지원
아동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나이별 차등 54만원~ 28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장애아동 10~20만원)
	부모급여 및 수당 지원	○만 2세 미만의 아동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일부 변경)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정책” 재구성

실제로, 임금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은 2020년 기준 전체 여성농업인의 7.8% 미만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피보험 단위기간³⁾이 180일을 넘지않으면 고용보험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여성농업인 종사 지위별 비율 현황(2013~2020년)]



*임금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2024. 2.)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임금근로자가 아닌 여성농업인은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출산급여 총 150만원(3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②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작업·가사를 도와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이 가능함([참고자료 1, 2] 참조).

3)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4)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임. 이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90일) 제도를 보장받지 못하는 자에게 출산급여(총 150만원)를 지원함.

또한, “농가도우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1조의2⁵⁾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중단하는 경우에 최대 100일 내에서 영농·가사를 돕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와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함.

반면, 육아휴직에 대응하는, 자녀 양육을 위한 영농의 일시 중단에는 지원 제도가 없는 상황임.

[여성 농업인 출산·육아 지원제도 비교]

구분	소관	정책명	사업내용	근거
출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유산·사산 포함)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총 150만원 지원 *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농가도우미 사업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배우자(남성농업인)에 대해 지자체별 1일 60,000~100,000원, 45~100일 한도내 지원(0~30% 자부담) * 지원단가·지원일수·자부담률 지자체별 차이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1조의2
육아	육아를 위한 영농 일시 중단에 대한 지원 제도 없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5.6.16.)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제출자료('25.6.5.)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농어촌은 육아보육시설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도시에 비해 접근성도 멀어, 출산과 양육에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⁶⁾되고 있음.

이는 가임기 여성들의 농업·농촌 분야 진입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바, 농촌의 저출생·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영농 중단 기간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농업인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청년 세대의 출산계획에 대한 연구를 보면, 소득지원과 육아시간 확보가 가능하면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⁷⁾, 이는 여성농업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둘째,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의료·보육·교육시설이 부족하고, 장거리 통학·통근 등으로 돌봄 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특히,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상당하며,⁸⁾ 이는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

6)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Ⅱ)」(육아정책연구소, 2023)

7)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6.)

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출산·육아 지원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의료·돌봄서비스의 격차를 보완한다면, 이는 청년층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반면,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이 존재함.

첫째, 근로자와 달리 농업인의 소득은 고정적이지 않고, 자연재해·가격 등의 요인으로 월별·연도별 소득 변동성이 크므로, 영농 일시중단 기간의 소득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라 여성농업인에게 출산급여가 추가로 지급되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과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현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가도우미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⁹⁾됨.

셋째, 현재 육아지원 제도가 없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¹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직종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8)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Ⅱ)」(육아정책연구소, 2023)

9)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5.6.16.)

10) 2024년 기준 653만 3천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임금근로자에는 농업인이 포함됨.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종합하면, 여성농업인의 출산·자녀양육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은 출산을 제고, 도농 간 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동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득산정의 어려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등과 중복수혜 우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공약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가 포함되어 있고,

2024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¹¹⁾와 관계부처는 자영업자 등¹²⁾ 고용보험미적용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육아지원 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이에 대한 향후 논의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

11) 대통령이 위원장인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총괄기구)

12) 농업인을 포함하여 사각지대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추후 논의 과정에서 대상범위 등이 확정될 예정(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5.6.16.)

참 고 자 료

참고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제출자료(2025.6.5.)

☐ 목적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감소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으로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여성농업인은 '19.7.1부터 적용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경영주.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신청 가능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

☐ 지원액 : 총 150만원(50만원×3개월)

* 연간 지원 인원 12,600명(농업인 포함)

☐ 신청시기 :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

☐ 제출서류

- ① 출산급여신청서 ② 농업경영체등록증 ③ 소득활동 증빙서류

*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추가제출

☐ 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참고 2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 출산 관련 지원 사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제출자료(2025.6.5.)

1. 농가도우미(여성농업인 지원)

□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 영농 중단 방지 및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05년부터 지자체로 이양)
- 시행방법 : 각 시·도별 자체 계획에 의거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배우자(남성농업인)
 - 지원액 : 지자체별 1일 60,000~100,000원 지원(0~30% 자부담)
 - 지원일수 : 지자체별로 45~100일 한도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 ※ 지원단가.지원일수.자부담 비율은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농가도우미 지원현황

시·도	지원기간 (일)	기준단가 (1일)	'24년 실적		'25년 계획		예산비중('25)			비고 (도비:시군비)
			인원(명)	금액(백만)	인원(명)	금액(백만)	도비	시군비	자부담	
경기	90	97,216	22	149	17	150	20	80	-	100
충북 (영동, 괴산, 음성)	80	79,000~80,000	6	49	9	61	-	70~88	12~30	70~88
충남*	45~60	60,000~100,000	9	26	28	99	-	80~100	0~20	80~100
전북	100	90,000	45	364	45	405	25	65	10	90
전남	(여)70 (남)20	80,240	71	256	77	288	10	70	20	80
경북 (구미, 울릉 제외)	(여)90 (남)10	90,000	68	310	144	648	24	56	20	80
경남*	90	81,000	38	260	48	350	20	65	15	85
제주	90	80,240	28	181.7	32	184	100	-	-	100
계			287	1,595.7	400	2,185				

* 충남(7개 시군) : 서산, 논산, 청양, 금산, 부여, 홍성, 예산

* 경남(13개 시군) : 진주, 사천,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2. 지자체 기타 출산 후 지원 정책 사례

□ 광역지자체 지원

시도	사업명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 기간	1인당 지원액 (만원)	2024년 수혜인원 (명)	2023년 결산 (백만원)	2024년 예산 (백만원)
충북	출산육아수 당	도내 거주 주민 부 또는 모와 출생아('23.1.1. 이후 도내 출생)	1인당 총 1,000만원 (연차별 분할)	12개월	1000	7,452	21,850	7,452
충남	행복키움수 당	보호자 최소 1인과 아동이 도내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및 실거주	월 10만원 (만12~36개월 미만 아동)	12개월	10	20,654	26,405	24,786

□ 기초지자체 지원

시도	시군구	사업명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 기간	1인당 지원액 (만원)	2024년 수혜인원 (명)	2023년 결산 (백만원)	2024년 예산 (백만원)
인천	강화군	양육비	출산일 전 관내 주민등록 두고 2년 이상 거주, 같은 세대 출생신고 한 대상아 부 또는 모	출생순위별 지원기간 차등지원 첫째(120), 둘째(240), 셋째(540), 넷째 이상(720)	최대 3년		5,833	541	542
충북	단양군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	부 또는 모 셋째 이후 자녀 관내 주민등록, 거주, 5세 이하 아동	만0세: 월 35만원 만1세: 월 30.8만원 만2세: 월 25.4만원 만3~5세: 월 15.8만원			64	198	297
충남	홍성군	육아지원금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부터 3개월 거주 셋째 이상 출산가정	월 15만원, 24회	2년	15	170	159	306
충남	태안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군 주소 두고 거주 12세 이하 아동 둔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50%	월1회	최대 34	8,813건	43	50

시도	시군구	사업명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 기간	1인당 지원액 (만원)	2024년 수혜인원 (명)	2023년 결산 (백만원)	2024년 예산 (백만원)
전남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22.1.1.이후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육아휴직자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대상자녀 군 주민등록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월 50만원, 최대 12개월(최대 600만원)	12개월	600	10	10	15
경남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만8세 이하 자녀 둔 남성 육아휴직자	월 20만원 한도	3개월	60	200	66	120
경남	창녕군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셋째이상 자녀 중 5세 이하 (5세 이르는 해당연도까지 지원) 영유아 양육 가정, 모두 관내 주민등록, 거주	월 20만원			270	474	552
경남	남해군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부모 산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두고 거주(셋째아 이상)	출생일 다음달부터 만6세 미만 (최대 71개월까지)	71개월 까지		105	109	234
경남	거창군	양육지원금 지원	3개월 이상 관내 거주, 6세 미만 영유아 둔 가정	- 첫째, 둘째 : 20개월*30만원 - 셋째이후 : 60개월*30만원			250	957	1,980
경남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급요건 충족 육아휴직자 관내 1년 이상 거주, 대상자녀 관내 거주	육아휴직 사용 남성근로자 월30만원	6개월	180	15	20	20

* '24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참고 3

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제출자료(2025.6.5.)

<출산휴가 급여>

□ 지원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육아휴직 급여>

□ 지원목적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100%(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 1~3개월 :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 4~6개월 :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 신청시 육아휴직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제출 필요